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53
----------	------

2020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0월 16일, 송명화 의원 외 18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송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놀이란 목적 없이 자발적이면서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활동하는 적극적인 참여 행위로서,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
- 놀이를 한 어린이일수록 창의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역량이 창의성이라는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

- 그에 반하여 어린이 누구나 마음껏 누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미흡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어린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기본이념으로서 어린이의 놀 권리, 쉼 권리, 놀이문화 주체성에 대해 명시함(안 제1조).
- 2)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3) 놀이환경 조성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 4) 놀이환경 조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5)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범·공모사업 추진과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6)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3조).
- 7) 원활한 놀이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민간 총괄자문가,

주민협의회, 놀이활동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6조).

- 8) 시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놀이환경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놀 권리, 쉼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조례 제정의 타당성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를 놀이문화의 주체로 규정하고,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놀이환경”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 환경을 의미하며, “놀 권리”는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안 제2조).
-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 누구나 마음껏 누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¹⁾한 수준이며, 어린이를 도시공간의 주체로 인식하는 수준 또한 낮은 실정임.
-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외부공간인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1) 2016년 OECD 아동환경 조사에서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최하위, 아동결핍지수는 최고로 높아서 성장과정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 아동 삶의 만족도 최하위.

2) 관련 조례와의 관계

- 서울시에서는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동 조례 제1조 및 제2조2)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한다고 명시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유사성이 있지만, 본 제정조례안은 ‘놀이환경’ 구축 대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하고, ‘어린이3)’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에서 “놀 권리”에 대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놀 권리는 협약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

3) 조례안 검토

-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놀 권리 존중과 놀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안전한 이용을 위한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 안 제4조와 제6조의 본문 중 구청장에 대한 약칭이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4조 : 구청장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안 제6조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구청장

- 안 제5조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리고 지역주민과 부모, 어린이가 주체가 돼서 놀이환경을 조성하도록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 관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는 5년마다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푸른도시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조직구성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임.
 - 현재 도시공원 내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명시한 것은 적절하며, 푸른도시국에서는 일관된 정책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안 제11조(위원회 설치)부터 제13조(위원회 운영 등)까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배치되는 점이 없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다른 조례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을 것임.

○ 안 제14조는 총괄자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총괄자문가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겸임 가능 여부, 총괄자문가 인원수, 위촉기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용어의 약칭을 규정에 맞도록 수정
-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수정
-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시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53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약칭을 규정에 맞도록 최초로 용어를 사용한 곳에 표기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시 하며,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2. 주요 골자

- 용어의 약칭을 규정에 맞도록 수정(안 제4조 및 안 제6조)
-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수정(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시(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8호 중 “놀이환경”을 “시장이 놀이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의”를 “경비”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안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 조성을 위하여”를 “기반을 조성하도록”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u>구청장이</u>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p>	<p>제4조(적용 범위) ----- <u>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p> <p>① (생략)</p> <p>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u>놀이환경의</u>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관계 전문가 또는 <u>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p>	<p>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시장이 놀이환경</u>----- -----</p> <p>③ ----- ----- <u>구청장</u> ----- ----- -----.</p>
<p>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u>경비의</u>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제10조(재정지원) ① ----- ----- ----- <u>범위</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경비</u> ----- ----- -----.</p>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회의의원, 놀이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연령·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16조(도시공원 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공원 놀이활동가) ----

----- 기반을 조성
하도록 ----- .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쉼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든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및 놀이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관계 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9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심포지엄 등 개최
 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범·공모사업)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청장 또는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모방식 및 추진방법과 운영·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과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놀이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연령·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안건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 및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총괄자문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구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놀이환경 구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구성
3. 놀이시설 디자인, 기본·실시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자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가의 자격요건·위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조성·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공원 놀이활동가)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

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놀이환경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 정부, 자치구 및 놀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가이드라인 수립) 시장은 놀이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놀이환경의 평가)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제공)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